

조 정 조 서

사 건

이혼

신 청 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

피 신 청 인

조 정 장 판 사

조 정 위 원

조 정 위 원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

출석

피신청인

출석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은 상대방에게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민사·가사·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부제소합의), 이 조정 성립일 현재 각자 명의대로 보유, 부담하는 자산, 채부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각종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을 모두 포기하고, 일체 행사하지 않는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4.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